

서울특별시의회
제323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제 안 설 명



2024. 4.

서울특별시의회
유정희 의원 (더불어민주당, 관악4)

□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

유정희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

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.

□ 본 개정안은 시장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

유기동물의 정서안정과 사회화 적응을 위하여

임시보호자에게 유기동물을 임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

유기동물 임시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

발의되었습니다.

□ 주요 내용으로는

유기동물의 임시보호 기간 동안 접종 및 치료에 소요된

비용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

내용을 명시하여,

시민이 유기동물의 임시보호 및 입양에 대해 느끼는

심리적·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 있습니다.

- 이미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3개소에서는
유기동물의 가정 내 임시보호와 입양 프로그램을
운영하고, 치료비 지원도 하고 있으나
여전히 서울에서는 한해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약 15%가
새로운 보호자를 만나지 못하고 안락사되고 있습니다.

- 조례 개정을 통해 유기동물 임시보호에 대한
시민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여,
임시보호와 입양이 우리사회의 보편적인
반려동물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
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
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
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